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2-125호(2012.12.26,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5호(2013.4.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7호(2014. 9. 5, 개정)

제1조(목적) 「화장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및化妆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실적 등 보고방법)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난 해의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이하 “원료목록”이라 한다)을 보고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제조판매업자

가. 생산실적: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나. 원료목록: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 서식

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제조판매업자

가. 수입실적: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나. 원료목록: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 ② 제조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식을 전산매체(CD 또는 디스켓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실적보고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관련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제3항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기관) 제2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관련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 (사)대한화장품협회
2. 수입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25호, 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도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3-25호, 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57호, 2014. 9.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요령(제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 작성요령(별지 제1호서식)(※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

년도	생산된 년도 기재
제조판매업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이하 “등록필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상호
등록번호	등록필증에 기재된 번호
등록년월일	등록필증에 기재된 등록년월일
소재지	등록필증에 기재된 주소
제조판매업 구분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유형
보고 담당자	생산실적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기재
운영인원	해당업자의 총 종사자수를 직능별로 구분하여 기재 (실제로 화장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만 기재)
화장품 생산실적	별지 제2호서식
총 생산 품목수	연간 생산된 총 품목수 기재
총 생산량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하여 연간 총 생산량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생산량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총 생산금액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하여 연간 총 생산금액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생산금액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회사명	
대표자	

2. 화장품 생산실적 작성요령(별지 제2호서식)

년도	생산된 년도 기재
일련번호	
제조판매업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상호
제조업자	해당 화장품의 제조업자 상호
제조월	제품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기재할 것 (예: 2012년 1월 5일 → 2012-1)
유형표시	[별표 2]에 따라 기재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기능성 화장품만 해당)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복합유형을 구분 기재 (복합유형의 경우 모두 기재)
구분	건본품이란 건본용, 테스트용, 증정용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닌 제품
제품명	제품표준서의 제품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포장단위	생산된 포장단위에 대해 용량과 단위를 구분하여 기재
생산실적	생산량 : 포장단위 기준으로 생산수량 기재 생산금액 : 생산량 x 생산단가 (※ 단위 : 천원, 천원미만은 절사함)
용도	내수용, 수출용 구분하여, 수출용인 경우 EXP로 기재

3. 화장품 수입실적보고서 작성요령(별지 제3호서식)(※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

년도	수입된 년도
제조판매업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이하 “등록필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상호
등록번호	등록필증에 기재된 번호
등록년월일	등록필증에 기재된 등록년월일
소재지	등록필증에 기재된 주소
제조판매업 구분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유형
보고 담당자	수입실적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기재
운영인원	해당업자의 총 종사자수를 직능별로 구분하여 기재 (실제로 화장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만 기재)
화장품 수입실적	별지 제4호서식
총 수입 품목수	연간 수입한 총 수입 품목수 기재
총 수입량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하여 연간 총 수입량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수입량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총 수입금액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하여 연간 총 수입금액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수입금액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회사명	
대표자	

4. 화장품 수입실적 작성요령(별지 제4호서식)

년도	수입된 년도 기재
일련번호	
제조판매업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상호
수입월	수입된 해당 월 표기(예: 2012년 1월 5일 → 2012-1)
유형표시	[별표2]에 따라 기재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기능성 화장품만 해당)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복합유형을 구분 기재 (복합유형의 경우 모두 기재)
구분	견본품이란 견본용, 테스트용, 증정용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닌 제품 ※ 표준통관예정보고한 내용 기재할 것
제품명	한글 제품명(표준통관예정보고한 제품명) ※ 한글 제품명 미정 시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제품명만 기재가능
포장단위	생산된 포장단위에 대해 용량과 단위를 구분하여 기재
수입실적	수입량 : 포장단위 기준으로 생산수량 기재 수입금액 : 수입량 x 수입단가 (※ 단위 : US\$, 소수점 이하 절사함)
제조국	

5.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요령(별지 제5호서식)(※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

년도	해당년도
제조판매업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이하 “등록필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상호
등록번호	등록필증에 기재된 번호
등록년월일	등록필증에 기재된 등록년월일
소재지	등록필증에 기재된 주소
보고 담당자	원료목록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기재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실적	[별지 제6호서식]
총 보고 품목수	연간 총 보고한 품목수 기재
회사명	
대표자	

6.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실적 작성요령(별지 제6호서식)

년도	보고한 년도
일련번호	
제조판매업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상호
원료성분명	원료의 성분명 모두 기재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기재함)
제품명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유형표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제조업자	해당 화장품의 제조업자 상호 (※ 수입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외국 제조회사 상호를 기재)

[별표 2] 유형별 분류에 따른 유형표시(의약외품은 제외한다)

화장품의 유형		유형표시
가.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품류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가1
	2) 영·유아용 로션, 크림	가2
	3) 영·유아용 오일	가3
	4) 영·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	가4
	5) 영·유아용 목욕용 제품	가5
나. 목욕용 제품류	1)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나1
	2) 목욕용 소금류	나2
	3) 버블 배스	나3
	4)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나4
다. 인체세정용 제품류.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화장비누는 제외한다.	1) 폼 클렌저	다1
	2) 바디 클렌저	다2
	3) 액상비누	다3
	4) 외음부 세정제	다4
	5)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다5
라. 눈화장용 제품류	1) 아이브로 펜슬	라1
	2) 아이 라이너	라2
	3) 아이 섀도	라3
	4) 마스크라	라4
	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라5
	6) 그 밖의 눈화장용 제품류	라6
마. 방향용 제품류	1) 향수	마1
	2) 분말향	마2
	3) 향낭	마3
	4) 코롱	마4
	5)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마5
바. 두발 염색용 제품류	1) 헤어 틴트	바1
	2) 헤어 칼라스프레이	바2
	3) 그 밖의 염모용 제품류	바3
사. 색조화장용 제품류	1) 볼연지	사1
	2)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 케익	사2
	3) 리퀴드, 크림, 케익 파운데이션	사3
	4) 메이크업 베이스	사4
	5) 메이크업 픽서티브	사5
	6) 립스틱, 립라이너	사6
	7) 립글로스, 립밤	사7
	8) 바디페인팅, 분장용 제품	사8
	9) 그 밖의 메이크업 제품류	사9

화장품의 유형		유형표시
아. 두발용 제품류	1) 헤어 컨디셔너	아1
	2) 헤어 토닉	아2
	3) 헤어 그루밍에이드	아3
	4) 헤어 크림, 로션	아4
	5) 헤어 오일	아5
	6) 폼마드	아6
	7)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아7
	8) 샴푸, 린스	아8
	9) 퍼머넌트 웨이브	아9
	10) 헤어 스트레이트너	아10
	11)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아11
자. 손발톱용 제품류	1) 베이스코트, 언더코트	자1
	2)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자2
	3) 탑코트	자3
	4) 네일 크림·로션·엔센스	자4
	5)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자5
	6)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자6
차. 면도용 제품류	1) 애프터셰이브 로션	차1
	2) 남성용 털킴	차2
	3) 프리셰이브 로션	차3
	4) 셰이빙 크림	차4
	5) 셰이빙 폼	차5
	6)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차6
카. 기초화장용 제품류	1) 수렴·유연·영양화장수	카1
	2) 마사지 크림	카2
	3) 에센스, 오일	카3
	4) 파우더	카4
	5) 바디 제품	카5
	6) 팩, 마스크	카6
	7) 눈 주위 제품	카7
	8) 로션, 크림	카8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카9
	10) 클렌징워터·클렌징오일·클렌징로션·클렌징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카10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카11
타. 체취방지용 제품류	1) 데오도란트	타1
	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타2

[별지 제5호서식]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서				
				년도
제조판매업자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소재지				
보고 담당자	성명		전화	
	Fax		전자우편	
원료목록 보고실적	[별지 제6호서식]			
총 보고 품목수				
<p>화장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회 사 명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대 표 자 : (인)</p> <p>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